

부천시 전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6월 30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7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0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5년 7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원미구 보건소장 정영구)

□ 제안이유

- 「전염병예방법」 제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맞추어 부과·징수 기준 및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과태료 부과대상은 「전염병예방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제4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으로 정함.(안 제3조)
- 과태료는 위반 차수에 따라 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위반 100만원으로 정함.(안 제4조 및 별표)
-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안 제5조)

- 과태료는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미납자에 대하여는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 하도록 함.(안 제6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해당기관 병의원이나 소독업자에 대해 기존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었나요?	○ 상위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 차수별로 세분화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전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안 번호	제402호
의결 년월일	2005. 7. 15 (제120회)

제출연월일: 2005. 6. 30

제출자: 부천시장

□ 제안이유

- 「전염병예방법」 제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맞추어 부과·징수 기준 및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과태료 부과대상은 「전염병예방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제4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으로 정함.(안 제3조)
- 나. 과태료는 위반 차수에 따라 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위반 100만원으로 정함.(안 제4조 및 별표)
- 다.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과태료는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미납자에 대하여는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
하도록 함.(안 제6조)

부천시 전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방접종 실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2. 법 제40조의6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실시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시장은 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결정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할 법원에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4조관련)

위 반 내 용	근 거	부과금액(단위:만원)		
		1차	2차	3차
1. 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 실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전염병예방법 제56조의2	30	50	100
2. 법 제40조의6제2항 규정에 의한 소독 실시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전염병예방법 제56조의2	30	50	100

비고 : 위반행위에 대한 차수의 적용은 최근 1년간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 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견제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기한	년 월 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은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 천 시 장 (인)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나 대리인(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형제자매) 선정시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서 담당자 ○○○ (☎032-320-34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문서번호 : 시행연월일 : . . .

수 신 :

제 목 : 과태료부과징수 결정통지서

귀하께서는 「전염병예방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위반하였기 「부천시 전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부천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 제 호

과태료 처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 반 장 소	시설(명칭)명		업 종	
	소 재 지			
위 반 사 항	위 반 법 조 항		위반내용	
	산출근거			
과태료금액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 g/m²)

[별지 제4호서식]

(세 외)
과태료납부통지서

제 회 회계연도 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p>위의 과태료는 「전염병예방법」 제56조의2 및 「부천시 전염병 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납부장소 : 부천시금고(농협)</p> <p>년 월 일</p> <p>부 천 시 장 (인)</p>		

(세 외)
과태료납부서
(수납은행보관용)

제 회 회계연도 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p>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p> <p>년 월 일</p> <p>부천시금고 :</p>		
수납날자도장	(인)	

(세 외)
영수필통지서
(부천시통보용)

제 회 회계연도 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p>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p> <p>년 월 일</p> <p>부천시금고 :</p> <p>부 천 시 장 (인)</p>		
수납날자도장		

(세 외)
영 수 증
(납부자용)

제 회 회계연도 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p>위의 금액을 영수 합니다.</p> <p>년 월 일</p> <p>부천시금고(인)</p>		
수납날자도장		취급자인

과태료납부독촉장

제 호

납부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설(명칭)명	
과태료 납부 통지서 번호				
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기에 년 월 일까지
부천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제 호

시설(명칭)명 :

주 소 :

성 명 : 귀하

과태료 납부 통지번호	고지금액	취소(변경)액	차액	비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

제 호			
수 신	지방법원장		
제 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p>1. 「전염병예방법」 제56조의2 및 「부천시 전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과 관련입니다.</p> <p>2. 「전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하여 「부천시 전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시기 바랍니다.</p>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및 불 복 내 역	과 태 료 납 부 통 지 일 자		과태료 금액
	부 과 관 청		이의제기일자
	과태료에 처한 사유		
	본인의 불복 사유		
<p>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font-weight: bold;">부 천 시 장 (인)</p>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부과징수대장

일련번호	통지서번호	과태료처분 통지일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금액	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당초	독촉		성명	주소		이의제기일	법원 통보일

297mm× 210mm(일반용지 60g/m²)

관계법령 발췌서

○ 전염병 예방법

제21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등<개정 2000.1.12>)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하여 시행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20, 1995.1.5, 1997.12.13, 2000.1.12>

②시장·군수·구청장외의 자가 이 법이 정하는 예방접종을 시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83.12.20, 1995.1.5, 1997.12.13>

제40조의6 (소독의 실시 등) ①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독업자가 소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 사항을 기록·보관 및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의2 (과태료) ①제21조제2항 및 제4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4.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5.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3.12.27>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3.12.27>

[본조신설 1983.12.20]

○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개정 2000.8.28>) ①법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9.7.23, 2004.3.17>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0.8.28> [본조신설 1984.6.30]